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42

발의연월일: 2021. 4. 21.

발 의 자:최연숙・김정재・권은희

남인순・金炳旭・이태규

이명수 · 서정숙 · 권영세

홍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,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,045건 발생하였고, 3,699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소에 불과해 쉼터에서 피해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756건에 그쳤음. 또한 피해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5,281건, 여자인 경우가 14,764건으로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나 쉼터는 여자아동전용이 61%를 차지해 성별 전용쉼터가불균형하고, 지역별 쉼터 설치 편차가 심하며,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, 아동학대 발생 건수,

피해아동의 성별,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 2호 신설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(이하 이 조에서 "학대피해아동"이라 한다)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 아동의 수, 아동학대 발생 건수, 학대피해아동의 성별,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
- 2.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적인 의료비 지원
- 3.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
- 4.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·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, 지방변호사회 또는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
- 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아동을 위

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법인 및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⑤ 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·이용 대상,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2.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 해아동쉮터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9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
	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	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
	입은 아동(이하 이 조에서 "학
	대피해아동"이라 한다)을 일정
	기간 보호하고 전문심리상담
	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
	위하여 지역별 아동의 수, 아
	동학대 발생 건수, 학대피해아
	동의 성별, 연령 및 장애특성
	을 고려하여 설치 · 운영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
	<u>와 같다.</u>
	1.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
	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
	2.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로 인
	한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
	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
	3.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
	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
	유프로그램 제공
	4.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

· 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 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, 지방변호사회 또는 「법률구 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5.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아 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 터의 운영업무를 법인 및 제45 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.

⑤ 쉼터의 설치기준 ·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 소 · 이용 대상,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

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

같다.

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·③ (생 략)

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 터를 지정할 수 있다. ----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학대피해아동쉼터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